

의안번호	제>>/호
의 결 년 월 일	2001.11. . (제 회)

##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년 11 월 >0 일

#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20 .  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제정이유

-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에 의하여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시·군에도 설치토록 됨에 따라
-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「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」로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3조 내지 제4조)
- 나.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함 (안 제6조)
- 다. 식품위생업주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용자대상업종을 정함 (안 제12조)
- 라.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함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관련법령 발췌(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, 제71조,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제39조의2, 제42조, 제43조,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, 지방재정법 제115조)

○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기준 공문접수 [보위 65400 ~ 3444(2001. 9. 15)]

나. 입법예고

○ 기간 : 2001. 10. 10 ~ 2001. 10. 29

○ 결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다. 기타 :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

##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,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영업자”이라 함은 법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대여”라 함은 서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용자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운용 수익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3.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
4. 식품위생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5.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

하는 사업

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며 보건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, 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제6조(기금관리위원회 구성)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1. 보건소장

2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보건과장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

2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수립)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
3.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

제11조(사업의 집행)①제4조 각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.

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.

제12조(자금용자)①제4조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용자한다.

②용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③시설개선 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,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용자신청)①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용자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용자금 대여)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서산시와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·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15조(사후관리)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용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

음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보고 등)①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결산 및 보고)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수당 등의 지급)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관련규정의 준용)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15조를,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현 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